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23557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235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4. 8 선고 2001나65078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B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율)

【피고,상고인】 신BA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B 담당변호사 여CA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8. 선고 2001나6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2000. 12.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900,000,000원에 대한 2000.

12. 2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7.2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AA은행(2001. 11. 1. 주식회사 AB은행과 합병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주택은행'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경DA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을 하면서 그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대출금상환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은 것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의 상환방법을 상환계획서대로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상환계획 등을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상환에 필요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로서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로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상환계획서대로 상환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중도금 수납계좌를 주택은행에 개설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상환약정이 있었고 상환계획서대로의 변제obligation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회사가 주택은행에 개설한 분양대금 수납계좌는 소외 회사 단독명의로 보통예금이고, 주택은행이 대출 당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상환계획서의 상환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은행이 위 수납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거나 그 밖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수납계좌에 대하여 인출 제한 등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택은행에게 소외 회사가 개설한 위 수납계좌에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당액을 임의 상환받거나 인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를 관리할 권리나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건설업자운전자금대출의 성격 및 분양대금으로 당해 공사대금에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주택은행에게 위 수납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 상환계획서에

다른 상환예정액 상당을 계속 예금으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위 대출이 분할상환이 아닌 일시상환약정으로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가 1998. 1. 5.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으며, 주택은행에게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인출할 권리 또는 이를 제한하거나 이를 예금으로 계속 보관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회사가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택은행이 소외 회사에게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고 소외 회사의 위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주택은행에게 대출금 회수불능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은 상환계획서를 징구하고 분양대금 수납계좌를 주택은행에 개설하게 한 사례는 많으나 그 중 상환계획서대로 상환받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대출금에 대한 1998. 1. 7.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7.25%인 사실은 원심이 확정된 바와 같으므로,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0. 12. 29.부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연 17.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는 것임에도, 2000. 12. 29.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2000. 12.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900,000,000원에 대한 2000. 12. 2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7.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